

문서번호	경제정책과-17154
결재일자	2015. 12. 4.
공개여부	비공개(6)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산업기반팀장	경제정책과장
구금모	代김선국	12/04 이해우

-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-  
**사립과학관 등록신청 검토보고**

2015. 12.

**경제진흥본부**  
(경제정책과)

# - 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 -

## 사립과학관 등록신청 검토보고

정구민 외 1인(박현주)이 설립한 “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”의 과학관 등록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

### 과학관 개요

- 명 칭 : 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
- 설립목적 : 생명현상과 첨단공학을 통하여 다양한 동물의 특징과 생체모방기술과 관련된 현상을 직접 관찰 및 체험
- 구 분 : 사립·전문과학관 (분 야 : 과학, 생물, 물리, 화학)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6-1
- 설 립 자 : 정구민 외 1인 (대 표 : 정구민)
- 주요시설 : 전시실 4실, 연구실 16실 등

### 과학관 등록 요건검토

- 관련근거 :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
- 검토사항

구 분	전문과학관 등록요건	신청내용	비 고
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00㎡ 이상의 전시실</li> <li>· 사무실·연구실·자료실·강당 중 1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시실 : 4실 259㎡,</li> <li>· 연구소 : 16실 514.54㎡</li> <li>· 강 당 : 1실 70.77㎡</li> </ul>	요건충족
과학기술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0점(종) 이상</li> <li>· 취급자료(시행령 별표1 참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878점 439종</li> <li>· 실험초자기구, 화학·생명과학·물리·세포유전실험기구 등</li> </ul>	요건충족
전문직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인 이상</li> <li>· 자격기준(시행령 제6조 참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1인</li> <li>· 시행령 제6조제3호, 4호 해당</li> </ul>	요건충족
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학관 등록신청서 1부</li> <li>·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</li> <li>·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</li> <li>· 전문직원 명단 및 이력서(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) 각 1부</li> <li>·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학관 주요사업계획서 1부.</li> <li>· 연간예산 수입·지출계획서 1부.</li> <li>·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</li> </ul>	구 비

## □ 검토결과 : 과학관 등록 조치

- 「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」은 정구민 외 1인(박현주)이 2006년 9월 29일 설립하여 종합박물관(서울시-제30호)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, 박물관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박물관 등록 취소(2015년 12월 2일)를 하였고 이와 동시 과학관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하였고,
- 신청내용에 대한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, “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”에 정한 과학관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과학관 등록 조치

※ 박물관과 과학관은 중복 등록 불가

## □ 과학관 등록효과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가능 (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)
- 과학관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음 (법 제18조)
-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(법 제19조)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 범위에서 접수가능(법 제19조의2)

## □ 행정사항

- 과학관 등록증 발급
- 과학관 등록사항 공고
  - 공고번호 부여(정보공개정책과), 시보게재(시민소통담당관)
- 과학관 등록 통보(서울시→미래창조과학부)

- 붙임 : 1. 관련규정  
2. 서울지역 등록과학관 현황  
3. 과학관 등록증(안)  
4. 공고문(안)  
5. 신청서류 각 1부. 끝.



<과학관 전경>



<1층 전시실>



<2층 전시실>



<3층 교육장>



<염기서열 분석기>



<DNA칩 제조기>